

박형준 / 5월 / 기출GS / 7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62380	18	11.5	17	12	58.5	1	3.45%	5	29
562576	15	9.5	14.5	10	49	2	6.90%	5	
563443	14.5	10	14	10.5	49	2	6.90%	5	
562188	11.5	8.5	16	12	48	4	13.79%	4	
563199	14	7.5	16	10.5	48	4	13.79%	5	
563195	15.5	7	15	9	46.5	6	20.69%	4	
562578	15	7	15	9	46	7	24.14%	4	
562813	10	9	15.5	11	45.5	8	27.59%	4	
562403	12.5	9	14	9	44.5	9	31.03%	4	
563528	13.5	8	15	8	44.5	9	31.03%	4	
562434	15	9	12	6	42	11	37.93%	5	
562508	14.5	9	12.5	6	42	11	37.93%	4	
562176	12	8	12.5	9	41.5	13	44.83%	3	
562227	11.5	6.5	12	9	39	14	48.28%	5	
563002	14	7.5	8.5	8.5	38.5	15	51.72%	5	
563344	12	6	12.5	8	38.5	15	51.72%	4	
562320	9.5	6.5	15	7	38	17	58.62%	4	
563311	13.5	5	13	6.5	38	17	58.62%	5	
562358	10	8.5	13	5.5	37	19	65.52%	5	
562305	9	7.5	13.5	6	36	20	68.97%	5	
562924	14.5	5	13	3.5	36	20	68.97%	5	
562408	12.5	6.5	13.5	3	35.5	22	75.86%	5	
562189	11	5	10	9	35	23	79.31%	3	
563029	12.5	8.5	13.5	0	34.5	24	82.76%	4	
562397	14	6	14	0	34	25	86.21%	4	
562339	13.5	7	12.5	0.5	33.5	26	89.66%	4	
562783	13	5	10	5.5	33.5	26	89.66%	4	
562326	10	4.5	7	6.5	28	28	96.55%	4	
562342	0	5	12	4.5	21.5	29	100.00%	3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5월/기출GS/7회/1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출GS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7회는 2024년 61회 기출문제였습니다. 61회 특허법은 복잡한 사실관계로 많은 분들의 당황스러움을 유발했던 회차였습니다. 문제 1번 역시 일부 논점들을 찾아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의 경우 6조에 따른 특별수권이 주논점이었습니다. 특별수권 없이 국내 우선권 주장 및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은 대리권 흠결이므로,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보정요구서가 발송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논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답안이 통째로 무너지기 쉬우므로, 총칙과 같이 중요도가 낮더라도 기본기를 잘 닦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국내 우선권 주장에 대한 단문 문제였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대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취지와 장점을 설명하고 개량발명의 예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 예시를 A, B등의 구성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신 경우 더욱 인상이 좋았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은 주식회사 무에 대한 을의 권리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2026.7.1.일 기준 아직 등록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보상금청구권을 주논점으로 잡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보상금청구권 논점을 잘 찾았더라도, 구체적으로 권리 성립 요건들을 나열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포섭을 진행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많이 갈리는 문제였습니다.</p>	

(3) 설문 4

설문 4는 보상금청구권 청구 기한, 청구가능금액, 특허권 존속기간에 대해 차례로 답을 작성해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4-1에 대해 보상금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해 작성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해당 설문은 청구기한인 단기소멸시효에 대해 작성해주셔야 하므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구 금액에 대해 병의 실시료를 유추하는 것을 잘 찾아주신 분들이 많았으나, 구체적으로 8개월을 곱해 정확한 금액을 적어주신 분들이 더욱 인상이 좋았습니다.

존속기간 역시 국내우주의 경우 기초출원일이 아닌 실제출원일 기준으로 20년이 기산된다는 점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소결

전체적으로 답을 틀리기 쉬운 논점들이 많았습니다.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 놓고 있지 않으면 시험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실수가 유발되기 쉬우므로, 오답 노트 등을 통해 주의사항 확실히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5월/기출GS/7회/2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 2번은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 등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물어보는 방식이 모호하고, 익숙치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만큼 답안들이 많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채점하면서 느꼈던 점 작성해보겠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은 청구취지, 청구원인으로서의 특정과 확인의 이익 측면에서 기재 정도를 기술하는 일종의 단문 문제였습니다. 다만 짧게 사안 조금씩 적어준 경우도 좋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으셨을 것이라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사회통념상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청구취지 불특정의 사실관계가 주어진 상황에서, 청구인용 및 기각판결의 이유와 효과, 문제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물어보는 방식 자체가 생소해서 다들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물어보는대로 이유, 효과, 문제점을 답안 무너지지 않고 가독성 있게 작성해주신 경우 인상이 좋았습니다.</p> <p>인용판결의 경우 청구취지 불특정이 간과되었다는 점, 하지만 기속력을 가진다는 점, 분쟁 지연 문제 및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작성해주셔야 하고, 기각판결의 경우, 적법특정 여부는 직권 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점을 써주셔야 합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의 경우 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그에 대한 심취소인만큼, 법원은 각하심결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심판원에서 판단하지 않은 본안 심리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제한설을 근거로 본안 심리 가능하다고 작성해주셨는데, 각하심결에 대한 심취소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4) 설문 4

설문 4의 경우 침해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자료제출명령, 구체적 행위 제시 의무 등의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 자체를 떠올리지 못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1차 때 많이 다루셨을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보단 이런 규정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정도로 공부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소결

해당 문제 역시 답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많은 분들께서 잘 준비해가시는 A급 논점이긴 하나, 어떤 측면으로 물어보냐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측면으로 물어봐도 답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오개념 없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5월/기출GS/7회/3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 3번은 정정청구 관련 논점이었습니다. 매년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에 대한 논점이 A급으로 찍히지만, 내용이 많은 만큼,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에서는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주어져있어 난이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은 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허용한 취지와 허용범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어본대로 취지와 허용범위를 각각 배점에 맞게 두껍게 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판시하였고,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조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조문 병기 해주시면 좋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는 오류 정정 범위에 포함되는 상황에 대해 묻고 있는데, 해당 설문에 대해 무엇을 작성해야할지 잘 모르는 듯한 답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류의 정정에 대한 판례로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기재불비 해소, 모순이 없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시하였다는 점 잘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의 경우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과의 관계에 있어,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하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 반드시 청구범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은 오류의 정정이 아님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결론을 틀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p> <p>(4) 설문 4</p> <p>설문 4의 경우 진보성 판단방법에 대한 판례 작성 이후 사안포섭 통통하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므로, 대부분 판례와 함께 결론도 정확하게 잘 작성해주셨습니다.</p>	

3. 소결

논점이 명확할수록 판례의 현출도와 포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가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결론을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도 꽤 있었는데, 사람이 채점하는 방식에서 글씨체는 꽤나 유의미한 요소라는 점에서, 시간과 글씨체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박형준/5월/기출GS/7회/4번</p>	<p>채점자</p>
	<p>박수홍</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 4번은 균등론에 대한 실제 사실관계에서 청구범위를 그대로 긁어와 문제도 만든 경우였습니다. 특히 시험장에서 프린트 된 문제지로 받았을 경우, 수험생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낄 정도로 사실관계가 3쪽에 걸쳐 표로 작성되어 있어서 사안을 알맞게 포섭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특허발명 권리범위 속부에 대해 판단 기준을 묻고 있는 단문 문제였습니다.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에 있어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균등론을 일반적으로 잘 떠올리셨습니다. 간접침해가 성립할 경우에도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빼먹지 않고 작성해주신 경우 인상이 좋았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의 경우 균등론 중 제 1요건인 과제해결원리 파악방법에 대한 판례를 두껍게 잘 작성해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파악방법에 대한 판례들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어렵긴 하나 키워드 위주로 잘 작성해주셔야 하고, 판례를 소목차로 나눠 판례 논리를 작성해주신 경우 가독성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3은 구체적인 포섭이었습니다. 포섭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를 공지기술을 고려하여 특정하고, 확인대상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주신 경우가 가장 좋았습니다.</p> <p>3. 소결</p>	

특허법은 항상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출제되지만 61회는 유난히 불친절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같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멘탈 잡고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모든 문제를 고루 잘 푸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S 작성하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8

문제-1

1 실문(1)

3

1 문제권 - 보정명령 法463

특수 재산 처광은 방식 위반 대리인 행위 능력 속으로 되기
이후로 보정 명령 한다.

2 방식 위반 여부 (13)

대리인 거래 등도 하였으므로 방식 위반은 아니다.

3 대리인 흥결 여부 (각각)

(1) 임의 대리인 여부 (각각)

변리사 이성을 거래하면서 "조각기" 라고 함으로 임의
대리인이다

(2) 특별권 흥결 여부 (각각) - 法626호

특수권 주장 하기 위해서는 별도 수권행위 요해서 특별
권 흥결이 해당 한다.

4 보정명령의 취리와 내용

(1) 취리 - 대리인 흥결

변리사 이성은 대리인이 특수권자에게 임의

(2) 내용 - 특별권 흥결 필요

특수권 주장 하기 위해서는 별도 수권 요한다



II 실용(가)

4

1 국내 원권 규장 - 法 55조

출원된 편으로 국내 광권시점을 선출인으로 소급시켜
권한 부여 제도이다

2 취체제가 실용한 취기

法 59조에 따른 조약구축권 규장 제도인 취기
를 같이 하며 국내 선출인 선출제도 원권
구장은 인정하는 제도이다

3 우선권 규장 시 광권 - 개량발명 권의

시간 경과에 따라 개량발명권 하게 될
수 있고 개량 개량 발명의 특허권 확보
를 권의 부여의 용이함을 위함이다

4 개량 발명 예시

(1) 구성 추가

기존 발명이 특허한 구성의 추가로 인해 새로
운 구성을 가지게 됨을 의미 한다

(2) 구성 변경

A에서 A'으로 구성 변경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수단 발견하는 발명이다

(3) 구성 삭제

발명의 구성 중 일부를 생략하면 것으로
비용 절감 등이 이뤄진 가치가

(4) 구성 한정

상기 개념 A를 하위개념 a로 한정하여 구성이
공헌하는 효과가 적어서도 완전한 가치

II 실문 13)

1 물리점 - 보상금 청구권 - 법 66조

戊'는 출원 후 실시하는 무관 실시라 이므로 보상금
청구권이 성립요건과 행위를 5만 원과 일치

2 권리 성립 요건

(1) 보상금 청구 대상

① 출원 발명 실시 ② 출원공제 후 ③ 시면정고 후 오해

(2) 출원 발명 실시 여부 (각각)

戊'는 2024.02.01 A로 실시 권에 있으며
등록 사실이 없으므로 출원 발명 실시 권이

(3) 압으로 실시 여부 (각각)

비록 戊'가 비밀로 실시 권이기는 하나
압으로 실시 하는 것에 문제 없다

(4) 심사용권 인정 될 예비적 권리 (노) 法 59조 3항

1) 法 553 3항 소금 초과

3배 소금권 규정이 관관시점은 신청 권보성
 소금권 별 아니라. 신청권으로 소금권

2) 소절 - 2023.05.이 기음 관한

2023.05.이 기음 ~~2024.05.이 음~~ 후 실로
 신청권 권이 인정 되지 않음

(5) 출원 권개 여부 (각각)

2023.05.01 기음 1년 6개월이 리남 으므로
 출원 권개 있음

3 권리 행사를 5배 위반 결과

(1) 서면 경고

보상 청구권 고지하는 여부 등 출원 권이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함

(2) 실사 청구 法 59조.

2023.05.이로 부터 4년 이내에 실사 청구
 등을 해야 함

(2) 3선 실사청구 - 法 61조

무권리자가 출원 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이유로 法 61조 1호의 이유로 3선 실사
 청구 가능함

IV 실문(4)-1)

1 증용규정 - 法 65조 5항, 민법 166조

보상을 청구권 행사나 면책 개시는 민법 166조
관계 소멸 시효를 적용한다.

2 민법 166조 관련 해석

단기 소멸 시효 가산점을 관련 문제로 묻기 3번에
해당하지 않고 실경 등록을 기점으로 한다

3 결론 - 2028. 10. 01 까지

2024. 02. 01 부터 10년보다. 2028. 10. 01 이

때부터로 실경등록일(25. 10. 01)에서 3년내 행사한다

V 실문(4)-2)

1 증용규정 - 法 65조 2항, 法 128조 5항

보상을 청구권 행사 한시 없이 항위금지 받을
수 있는 경우 청구 가능 하다.

2 3자 실지로 위주 물리

(1) 구법상 취지

구법상 항위금지 받을 수 있는 실지로 통칙이 아닌
항위금지 받도록 하는 실지로 실지로 청구 가능 하다

(2) 사안의 경우

[실수로 함각 가부 - 작극] 은 A실수로 함각 가능하

[부실수로 함각 가부 - 소위] 부은 AB실수로 함각 못한다

3 결론

(1) 보상청 가능 기간 - 2025.02.01 - 2025.10.01

서면 신고 판결을 통해 실령 원 일까지 행사 가능해

(2) 보상청 가능 금액 - 1600만원

8개월간 월 200만원 실수로 1600만원 가능해

II 실문 (4) - 3

1 우선권 구상 효과 - 판관4점 소용호 法55조 3항

구상권 구상기 효과는 판관4점 소용호 권이기
출연 소용이 아니다

2 특허권 존속기간 - 10년

특허권 존속기간 출생일로 부터 20년 존속
존속한다

3 결론 - 2044.04.01 까지

2024.04.01 부터 20년인 2044.04.01 까지
존속한다



11.5

문제-2

I 실문1)

3

1 ~~특인대상 반영 권법 통 관원 위생제~~

[항위리]로 각법 통공 되기 위생제 사회 공법
실 다른 권과 구별 구분 해야 한다

[항위리]로 권법 통공 되기 위생제 특위
반영과 대비 가능할 권과 구분 요한다

2 특인의 이익 - 실4발명권 원상 위생제

장구 특인 실제 특위 이유 실4발명
사실과 관련 원상 필요 하다

3 ~~실문1) 항위리의 통공 (정답)~~

A', B, C 는 사회 공법상 다른 권과 구별 된다

4 ~~실문2) 항위리의 통공 (정답)~~

A', B, C 는 항위리 와 대응 되는 것이 대비가 가능

5 ~~실문3) 특인의 이익 (정답)~~

위생제 권법 통공 특위 반영 원상 변경 취급

A', B, C 는 A', B, C' 와 사실과 관련
통공 가능



II 실문(2)-1)

1 청구 인용 판결 이유 - 취지 불복명 간과

(1) 취지 불복명 심리 가부 (각각)

1) ~~신중위성 위생제~~ 무제한 살균제

중요한 권리 행인 심리의 취지 불복명은 불만 판결
의 ~~심리 가부~~ ~~이유~~ 무제한 살균에 대해 있다.

2) 광원코나 사항 위생제

취지 불복명 광원 코나 사항 이B3 당사자가
극강하기 양이도 재판 개안하도

3) 소결

A'항의 이유로 취지 불복명 광원코나 가부 하가.

2 청구 인용 판결 후과 - 기속력 (소1843 3항)

취지가 불복명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기속력이
발생한다

3 청구 인용 판결 불리법 - 비용, 기판

[소용 비용] 각각 당사자에게 부담이 크다

[소용 기판] 으로 불강 해결이 판결되고 각각 .

III 실문(2)-2)

1 청구 기각 판결 이유 - 취지 불복명



(1) 선순의성 제재

각각권 특인 심판에서 항 하가 불복되기
않은 권 하 불복 각하 게야 한다

(2) 소결

각하심결이 각각하 불복 한 기각 기회

2 항 기각 판결 효과 - 각하심결 확정

기각 판결 특별한 사건 없을 한 각하심결 확정

3 항 기각 판결 유예 - 결하권 보장

일차 항 판결 유예 한 이 유예 판결 유예
결하권 보장 하지 않은 판결 유예

IV 설문 13

2

1. 심판 대상 - 법 1663 항 관련 제

각하심결이 재판 심결 유예 한 심리 방법 은 각하심결
에 재판 권이 나타 날 판결 유예

2 심판 심리 방법 관련 제 - 유예 판결

각하 심결 유예 한 판결 유예 한 이 항 판결 유예
판결 유예 한 이 항 판결 유예

3 결론 - 불안 심리 불가

[심판 개시] 각하심결 관련만 가능 하므로 불안 심리 못함

[심리 범위] 각하심결 관련 무제한 심리 가능 하므로

[요결] 불안 심리 할 수 없다.

V 실문(5)

2.5

1 출원 규정 ① - 법 126조 2

(1) 구체적 행위 태양 태시 의무 - 법 126조 2

원래와 함께 구간에 대해 평가하는 과제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태시 해야 함

(2) 사안의 경우

C와 C'가 중복하다는 이판례에 대해 평가자인
2건 구체적 행위 태시 못함

2 출원 규정 ② - 법 132조

(1) 과로 태시 - 법 132조

증거 과로에 대한 구체적 권태 시권을 위한 태시이고

(2) 태시 의무 - 법 132조 1항 후

평가자는 일체 행위 들을 인용할 수 있는 과로
태시 해야 함

(3) 권한한 사유 - 법 132조 1항 후

권한한 사유가 인용되는 행위 거부 가능 하므로

11

문제 3

I 실문 11

55

1 관련 규정

(1) 무효상관 의의 취지 (제133조)

공익상 해가 있는 특허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 권리행사 금지 취지 (제133조외규)

권리행사의 권리를 위해 무효상관 권리행사 자체 권리를 보충 권명하는 제도이다.

2 특허 무효상관에서 특허 권명 인정 취지

(1) 권명 제도 취지 취지

특허권은 기술발견하는 기미하는 가리기 권리 유지를 위한 소로 작성 하는 제도이다

(2) 권명 항 제도 취지 취지

제136조 2항에 과하 권명상관 불인정 하지만 소송정제 및 불명세물 수개 인정 하고 있다

3 처용 범의 제한 권명 - (제136조 10항)

권명 항3 인의 권명 소항으로 인해 3차 불의 라 불리를 수개 처용 범의 제한이 권명 항3

4 처용 범의



(1) 권용 규정 - 법1332의 2 항 4항

권용 권3다 관련해서는 결정심판 법1362 1항

3항 4항 5항을 권용 하고 있고

(2) 구체적 범위

1) 권용 형식 - 법1363 1항

정관은 권용 범위 강령, 일록된 구체 사항 권용

범위 가 아닌 사항 권용 시한 제한 없다

2) 신규사항 추가금지 - 법1362 3항

3차 특허 라 범위 외 에 변경 조 된 범위 오 한 다

3) 실질적 범위 변경 금지 - 법1362 4항

변경 시 권용 조 된 실질적 범위 변경 허 가 없

다 변경 허 가 없

4) 특허 권리 포기 - 법1362 5항

권용 범위 에 개 한 결과 가 특 허 권 리 포 기

조 항 에 한 다

(3) 특허 권리 포기 예외

특 허 권 리 포 기 결 과 무 효 심 판 결 정 한 항 의 개 제

는 적 용 하 지 아 니 한 다

II 실문(2)

2.5

1 관련 규정 - 법1363 1항 4항

특 허 권 리 포 기 결 정 한 항 의 개 제 는 적 용 하 지 아 니 한 다

코변은 변경하기 양호 법에서 처분권

2 관련 위생

특히 위 위생은 제3차 불기라를 고쳐 하여
특히 위생은 술과 함께 공공하게 하기 양호 과제
불변을 제로하. 불기라 모든 것이 전 만
가장 하라

3 질문

(1) 과제 불변으로 해오

헌 136조 1항 3호의 명확하게하는 권경이고
헌 136조 4항의 명세서 3번 범위 모한가

(2) 불변으로 해오

헌 136조 1항 2호의 골조된 거래 사항 권경인
헌 136조 4항의 명세서 3호 3번 범위 변경으로
하기 안아야 한가

II 설명(3)

4.5

1 특히 위 위생의 불변의 설명 관계

(1) 헌 423 4항 추

헌 423항에는 특히 불변의 개성이 되는 것을 강제하고
불변의 설명은 그리고 아니 하라

12) 법 91조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항과 복제나 변형 발명의
설명에 아나

13) 법 42조 3항 1호

특허 발명인 은이 출원한 청구항을 기준으로 발명의
설명 상각하여, 개인, 회사에 특허권이 있다

14) 법 42조 4항 1호

특허 범위 자체가 발명인 설명에 개용 되고
발명인 설명을 ~~청구항으로~~ ~~특수한~~ ~~인용~~ ~~제약~~ 한다

15) 특허 범위 해석 원칙

특허 범위 해석은 청구항을 기준으로 발명인 설명으로
해석하여 기타 해석 한다

16) 제한 해석 원칙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발명인
설명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한 해석 못한다

2. 표에 대한 관관 - 관공 특허 분쟁법

(1) 발명인 설명 상각 관공 원칙

발명인 설명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관공 특허 하는 것은
관공 청구 항 을 따라 나타 내고 명세서 로 변
경 으로 변경 하는 것으로 처음 부터 나타 한다.

(2) 사안의 관공



1) 가제 불평호 해소 (소극)

특 1362 1항 3호 가제 불평호한 권은 명백하게 가호권다
아니고 특 1362 4항이 위반되어 명세서 조변인
불평호 설명 변경하고 무고

2) 가제 불평호 무소 해소 (소극)

특 1362 1항 2호 이 해광 한강 하리라고 특 1362
4항이 기해 명세서 조변 변경은 허용 안된다

3) 소결 - 중결 권 특법

중결 권 특법해이 실시하면 된다. 별도 관관보호하

IV 실문(4) 4.5

1 클레임 - 권보성 - 특 1362 2항

(기출 발권 후권 권도 기해 권리발명으로 복제 권어 수다
우기호제 사안이 권사 권보성 유무 불권다

2 사제라 관련 권보성 유무 관관 방법

(1) 용어 실사 관관 방법 취해

신형 발명과 특허 발명의 차이를 파악 하여
차이 크봉이 수봉이 이룬다 기호기 관관 모함다

(2) 영문도 취해

신형 용어이 권이 강사 특이 권이 특허 발명기
이르기는 단념 게 한다면 권보성인 인권 권가

(3) 기술과 사례 비교

선형변환의 기술과 사례를 정확하게 하는 방식 차이는
중요한 기술과 사례가 이점점을 지니라고 한다

(4) 사례와 비교

중요 변형은 양 부가적 가정에서 중요 변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임은 아니라고.

3 사례에 대한 관점 - 관점(1) 차이 - 차이

(X의 변형과 같은 경우 또는 서로 다른 경우이고
부드러운 변형은 부드러운 변형이 있다

(2) 선형변환 문제 양의

선형 변환에는 경우 서로 다른 경우 적용해서 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양의 양이다

(3) 사례 기술과 사례 비교 (적용)

부드러운 변형을 적용하여 적용에 이점점을
중요한 사례 기술과 사례 적용
만들고 있다

(4) 사례 - 사례와 비교

사례 사례 비교 사례와 비교 사례와 비교
기술과 사례 적용

12

출제 4

I 실출 11) - : 135도

5.5

1 특정 개성 발명이 특허발명 권리 속부 판단 기준 배제

- ① 특허발명 작성하고. ② 특정개성 발명 작성하고 ③ 권리 속부 판단 한다.

2 특허 발명 확립

특정 발명은 기술로 발명의 설명 할 수 있다

3 특정개성 발명 작성

특정개성 발명 설명서를 기술로 조면로 작성하여
작성 한다

4 특정 속부 판단

(1) 구성 권리 - 구성요 단배 위항 배제 (각각)

특정 발명가 권리 범위는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 결합에 의해 관련이 필요하다.

(2) 구성 변경 - 구성요 (각각)

1) 구성요 의미 권리 배제

특정 발명가 권리 범위는 구성요 구성요 구성요 변경권
특정 권리를 본다

② 2) 구성요 권리

㉑ 과제 해결 원리 증명 ㉒ 필요조건 증명 ㉓ 충분조건 증명
불가능 ㉔ 가거지로 ㉕ 비유적으로 풀이 가능하다.

(3) 구성 생략 - 생략 함해, 간접함해

1) 생략 함해 (23)

특히 별면의 구성요소는 모두 광역 구성요 이므로
이로 일부 생략할 것 함해가 아나

2) 간접함해 (3123) (333)

광역 함해 개별성 고려 해내 권유를 받기로 실시
하면 함해로 간접함해

(4) 구성 불가 - 아용함해 (333)

특히 별면에 새로운 구성이 불가 된 경우 부가로
권유 포함하고 그로 아용해내 불체성 두기 되면
취소에 이원함해로 보고 안가

(5) 구성 환경 - 선택함해 (21한쪽 각3)

반구방술에 개하 선택 별면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택 함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취소에 이다.

II 실문 (2) **4.5**

I 문제점 - 과제 해결 원리 증명

특히 별면의 구성 변경에 있어 권유하기 충분하기
위해 과제 해결 원리 증명 포함 가능 하



2 1. 29권 관할 방법 =

(1) 종류 (항설)

① 발명 권해 개비설 ② 개별권권 개비 설이 있다

(2) 위수제

과제 개별 권리와 ~~각종로라기~~ ~~클린 선로~~ ~~원칙 권로~~
 발명 권해를 ~~기권로~~ ~~하리~~. ~~기술사회의~~ ~~행성이~~ ~~총기~~
~~권면수~~ ~~개별권~~ ~~행성~~ ~~개비행자~~

(3) 권리

(기술적 사실 행성 개와 ~~각종로~~ ~~행성~~ ~~위수제~~
~~가~~ ~~일승~~ ~~타당하거~~

3 과제 개별 권리 존엄성 관할 방법

(1) 과제 개별 권리 존엄성 위수제

~~행~~ ~~법칙~~ ~~행성~~ ~~제부~~ ~~이호하여~~ ~~발명권~~ ~~설~~
~~행~~ ~~행성~~ ~~행성~~ ~~행성~~ ~~기술사회의~~ ~~행성~~
~~기권~~ ~~권~~ ~~사한~~ ~~로~~ ~~제부~~ ~~권~~

(2) 기술적 사실 핵심 권리 위수제

중대 발명이 공공에 기여한 가치에 개별
관계를 가치 위수제이다.

(3) 공차기술 결정 위수제

과제 행성 행성 행성 행성 행성 행성
행성 행성 행성 행성 행성 행성

(4) 기술4항 권리 과제 해결의 즉 결정 취해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권리가 권리 권점수
중의 발명권 권리 범위 권점수 권점으로만
해 설명한 가능하다고 할 권리.

4 결론 -

권리범위. 발명권 설명 광범하여 과제 해결 가능성 인정함.

II 실은(3) 2

1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권리

상하 방향 권점 들기로 슬라이더를 고정하는 방식의
간단한 구조이다.

2 과제 해결 권리 권리 여부 (각각)

발명권 고전로 권점수 하중시키면 슬라이 리가
구동하는 구조 개시 권리 있다

3 과제 해결 권리 대비 (4항)

특허 발명은 상하 방식 고정 고정 권점수 권리
권리 요구 조건 발명 특성 상하 권리

4 결론 - ~~판결~~ 기각 실용

과제 해결 권리 상하 방식 고정 권점수 권리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

<문제1>

15

I. 셋째

3

1. 법-법 463

자식재산권은 절차의 방식이 될지는 법 명령을
해야 한다. 대리권 의미가 존재한다.

2. 법-법 463의 내용

(1) 법 63

대리인은 국내외권유, 복대리인신임등에 대해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2) 사안

1) 복대리인 변리사 이원용 선임

변리사 임명하는 권한 위임 없이 복대리인 선임한 바
절차의 무효성이 있다

2) 국내외권유 (법 463)

변리사 임명하는 권한 위임 없이 ~~국내외권유~~ 한 바
절차의 무효성이 있다

3. 법-법 463의 취지

촉원인에게 대리인의 대리권 방위를 이유로 법
명령을 내려야 한다.

4.5

II. 생활 관

1. 국내특권권

(1) 의의 권리 (法52)

조약특권권과 행정권은 의의 권리 판정권을
소유하는 것이다.

(2) 권, 권리

① 출원권 ② 출원비용 출원 선출권 출원 비용 등
비용 내기 ③ 1년 이내 출원 비용 내기 ④ 출원 비용
출원 비용 내기 비용 내기.

2. 국내특권 권

(1) 내의 발명인 권

기본발명과 개량발명을 하나의 발명인 권 내기 권
내기 권 내기.

(2) 출원권

출원 비용 내기 비용 내기 비용 내기
내기 비용 내기.

(3) 선출권 권

선출 비용 내기 비용 내기 비용 내기
내기 비용 내기.

3. 개량발명의 예(1) 부가발명

A발명 (연필) 에 자루개(B)를 부가한 (A+B) 발명은
개량발명이다.

(2) 식위발명

일정 구성을 식위하여 얻어낸 것으로 개량발명이다.

(3) 변형발명

일정 구성을 변형하여 효율이 증대된 구성으로
개량발명이다.

II.

셋째 3번

2.5

1. 농어 - 법 653 (보상청구권)

출원인은 소청 인건하게 보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의 권리상립요건(1) 출원요건

수의 발명이 응시되어야 하며, 가의 산사나 의료 산사
이어야 한다.

(2) 실용성 (법 653 3항)

수의 보상청구권 행사는 실용성된 후에만 청구
할 수 있다.

3. 2의 권리행사권화(1) 서면경고

2의 보상금청구권은 가'의 권리실시를 요건일 하므로
서면경고를 해야 한다

(2) 심사청구 (法 59조)

실정된 특이한 보상금청구권은 심할 수 없음
2은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3) 원상회복 (法 61조)

2은 가'의 실수를 이유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IV. 선택 4번-11. 보상금회계청구 권능 거부 (각주)

2의 법원은 2025. 10. 1 등록일
가'은 2025. 2. 1 점령 승인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2은 보상금회계 권리를 할 수 없다.

2. 2의 보상금회계청구 기한(1) 法 65조 5항

실정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2) 사인

2은 2026. 1. 1까지 가'에게 보상금회계를 청구해야
한다.

2028. 10. 1

V. 선행 4-2번

1. 특허에 받을 수 있는 금액

(1) 법 65로 규정

특허심사청이 특허권이 실용성이 될 때까지 가장 많은 보상을 준수할 수 있다.

(2) 실시기간

2025. 2.1 부터 특허가 안정한 2025. 10.1 까지 특허가 유지된 기간에 실시한다.

(3) 실시유형

1) 특허권으로 계산

특허권 유지된 기간에 실시하는 특허가 유지된 기간에 실시한다.

2) 실시

특허권 유지된 기간에 실시하는 특허가 유지된 기간에 실시하는 특허가 유지된 기간에 실시한다.

(4) 소결

특허가 유지된 기간 (8년) x 특허가 유지된 기간 (200만원)
= 1600 만원이다.

VI. 선행 4-3번

1. 특허권 유지된 기간 (법 882)

특허권은 실용성이 유지된 기간 후 20년까지 유지된 기간에 실시한다.

2. 국내우선권규정의 효과(1) 핀란서명 효과

적법한 국내우선권규정을 한 국가 핀란서명도 인정된다.

(특허 55조 3항)

(2) 국제간행의 가산명

국제간행 가산명의 국가 핀란서명이 소급되지 않는다.

(3) 시한

핀란서명이 소급되지 않으므로 =

2024년 4월 1일부터 20년 후인 2044년 4월 1일

까지 유효하다.

3. A발명자의 국제간행관련

2044년 4월 1일이다.

<공>

<문제-2>

9.5

I. 선택 1번

2.5

1. 논점- 권리방식(권리상판) (法 135조)

가, 신출된 발명의 예방 및 권리 방식 권리방식
특권 판권을 갖는 상판이다.

2. 창작성의 특징

(1) 창작성

사리통상 다른 것 과 차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2) 사안

특정 A+B+C로 구체적에 특권된다.

3. 창작성의 특징

(1) 창작성

특허발명의 예방될 수 있을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2) 사안

특정 발명들의 예방가능하다

4. 특안의 이익 (창작성)

특허권자가 권리 존속하는 범위상 발명한 것을 소망
사할 수 있는 권한 수단인 것 특안의 이익 인정된다.



4444444444 X

II. 선출 2 번. 3.5

1. 채임용판결 판

(1) 판결의 이유

사실적 관행에서 통상이 인정되는 바 특허권이 타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2) 판결

상권이 취득되어 상업적으로 행하여진 특허의 ^{기반이 된} 이유에 적용된다 (法 189조 3항)

(3) 문제점

1) 상업적 관행

특허권을 판정하지 않고 특허의 타당성 여부 판단한 문제가 있다.

2) 상업적

상업적 여부 다시 심층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2. 특허가식판결의 판

(1) 판결의 이유

특성 A'의 종이판 ~~판정하여~~ 특허권이 특정되어 없음 바 가식 판 을 판

(2) 판결

가식성이 유지된다.

(3) 문제풀

甲에게 부여된 기법이 실시된다.

III 실문 3번

1

1. 농업 - 法 1863 6항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물 또는 방법에 관한
수 있는 사물에 관한 실용성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2. 무제특허

① 제1항의 경우나 ② 제1항의 심결판결에 불복
한 바 ^{사법} 심판의 결정을 하에 당해 심판에
주요한 것은 제1항의 제1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원은
제1항에 이를 심사할 수 있다.

IV 실문 4번. 2.5

1. 구체적 행위: 사사대우

(1) 특허, 특허 (法 126조 2)

특허권 취득을 위해서 특허권자는 출원인의 지적 재산을
보완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보호를 사사대우한다

(2) 사인

또한 法 126조의 2가 기법 2가지 구체적 행위



과거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2. 과과제출명령

(1) 과과제출명령 (법제132조)

법원은 등지의 신청서 의해 상대방에게 증거자료 인한 손해액 상영의 과과 과과를 명할 수 있다.

(2) 사안

~~부담~~ 과과 손해액 상영의 과과를 명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이 과과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끝>

<문제-3>

14.5

I 선택 1번 4

1. 정당권 의의 (法 133조의 2)

무효상판 권위 내역이 특허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2. 정당권 범위 (제1항)

정당권을 할 수 있게 한 바에 새로운 정당한 권위를 더한 후 무효상판 권위 내역이 특허권을 초과하는 범위이다.



4. 정당권 허용방식

(1) 주체적 현

특허권자가 정당권을 할 수 있다.

(2) 객체적 방식

1) 정당상판 권위 (法 133조의 2의 4항)

정당권자는 대법원 정당상판 현을 존중한다

2) 정당판권

① 정당판권 ② 신기술추가금지 ③ 신기술은 특이, 변경
되지 않을 것 ④ 독립된 특허권을 지닌다

3) 중복판권 배제

무효상판 시에 판권을 무효판권을 판단하지 않는다.



(3) 사양 변경

- ① 무효심판 계속 중 ② 재심원 계속 중
- ③ 정당무효심판 중이 될 수 있다.

3. 정당심판

(1) 타의, 취의 (제 136조)

특허권과 발명권 분양은 상호 배타적 심판이다.

(2) 변경

- ① 특허권자가 ② 정정청구, 신규사실추가청구, 실권청구
특허변경청구의 경우, 독립된 특허권을 기준으로
- ② 특허권 존속 중이 될 수 있다.

II. 신원 2번 2.5

1. 특허 [유형]

(1) 제 136조 함 같은 - 정정청구

- ① 청구방법을 정정하는 경우 ② 권을 가지는 사람은
정정하는 경우 ③ 분양청구 제를 발명권에 하는 경우가
있다.

(2) 정정 방법

1) 잘못 기재 사항

회로 청구된 명세를 기준으로 정정할 수 있다
(제 136조 3항)

2) 권리방기 침묵, 불응 개시

명세서 등 요건은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유입된 특이성 판독

① 권리방기 침묵, ② 지출 개시된 사항 중 어느 것
정당 특이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신규성추구권

정당방기를 기준으로 신규성추구 여부를 판단한다.

III. 선택 갱신

3

1. 권리방기 취소

(1) 법 42조 4항

권리방기 불발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2) 권리방기 기준 (부재)

권리방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선택 갱신
희망하거나 레할타성취한 것이다.

2. 권리방기인 발명의 선명함에

(1) 법 42조 3항 1호

특허는 공지의 대상인 바 발명의 선명함에
상시되어야 한다

(2) 법 42조 4항 1호

특허는 공지의 대상인 바 발명의 선명함에 권리방기가

(4) X의 특정한 권리

X는 공중탑에 다른 건물 결합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가리켜 Y로부터 영위 하였다.

(5) 소멸

X의 권리가 부당판타는 것은 ~~“사후적 권리”~~이므로
권리가 소멸한다.

(공)

3. 간접침해의 종류

(1) 타의 권역 (法 1212)

특정한 무차별성원인 하 침해행위인 비특정하여 권역
권한자를 권역으로 간주한다.

(2) 물건발명의 종류 (法 1213 1단)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함양하여 실시하는
종류 간접침해이다.

(3) 전문등의 이미

전문등의 공표등을 가진 물건을 이미한다.

(4) 권리범위확장행위 가부 (法 1213)

法 1213 1단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인 하
2단 대응하는 물건을 권리범위확장으로 할 수 있다.

II. 실용 객체 3

1. 과제해결완전 동일성 판단

(1) 기술상 객체 파악

발명의 실용의 목적에 공과하는 함양하여 특허발명의
특정한 과제해결완전하에 기술한 기술상 객체 무의미성을
신뢰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과제해결완전 평가 이유

특허발명 신뢰의 가치는 같은 공과하는 해결책의
모든 사례를 해결하여 기술발명의 기여함기

일단으로 과제해결능력을 증진해야 한다.

(3) 공리식 활용

공리식은 활용하여 가설발언에 기여함이 신원적 가설
이므로 신원적 가설을 개발하는 필요성이 이제
충분한 비율 이어 한다

(4) 과제해결능력 특점

가설발언이 기여한 관이 따라 과제해결
능력의 특 점 증 진 하 야 하 는 다.

2. 각종호리의 신원적 증명

(1) 원칙

특수발언이 특정 과제를 신원적 해결할 가능
한 각종 호리의 신원적 증명 필요 성

(2) 가설상 핵심 양자

가설상 핵심이 공인 경 상 양자 중의 " 개 변 의
가 설 상 핵 심 양 자 중 의 개 변 의

Ⅱ. 실문 3번

2

1. 특의 가설상 핵심 양자

특은 공리식의 적용이 필요 성 이 충 분 한 비 율 이
충 분 한 비 율 이 충 분 한 비 율 이 충 분 한 비 율 이
충 분 한 비 율 이 충 분 한 비 율 이 충 분 한 비 율 이

2. 각종권자가 신원상인 동일권리 (특)

(1) 회권 불능 공작권 존재

타권 불능 공작권이 이미 존재했음

(2) 소멸

공작권이 존재하므로 따라서 "내부적 구성 가능, 역사는"

이유를 판단해야 하고 구성이 다른 바 된다 동일하지 않다

3. 결론

인용상권이 여신된다.

과잉!

(특)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